

#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이영실 의원 외 32명
- 나. 의안번호: 제1022호
- 다. 발의일자: 2023. 8. 14.
- 라. 회부일자: 2023. 8. 21.

### 2. 제 안 사 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 신설  
(안 제10조제5항제4호).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나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위원 위촉 시,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이는 상위법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) 제22조(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) 제3항<sup>1)</sup>의 개정('23.3.28)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,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법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('23.3.28) 이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<sup>2)</sup>하고 있는바, 본 조례안에도 부칙에 적용 시기를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혼선을 피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### <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10조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생략)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3. (생략) <신설>	제10조(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중에서 해당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⑥ ~ ⑩ (현행과 같음)
⑥ ~ ⑩ (생략)	

1)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2) 제2조(적용례)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.